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1조 개정)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심사 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기준)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버린다)을 합산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70 이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③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든 의료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기준) ① 공단은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버린다)을 합산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1 ~ 2 호 (현 행)
2. 제2호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80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	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 중 보건복

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③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든 의료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2683